

붙임(보도 참고)

'15.7.22(수) 17:00부터 보도 가능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

2015. 7.2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 추진 배경	1
II . 현황 분석	2
III . 주요 추진과제	4
1. 특허 무상 개방에 대한 특허료 감면	5
2. 개방특허 이전 및 사업화 지원	6
3. 특허기술 수요-공급 매칭 기반 구축	7
IV . 기대 효과	8
V . 향후 추진계획	8

- <붙임> 1. 현행 특허료 감면제도 개요
2. 무상 개방특허 특허료 감면 절차
3. 국내 기술거래기관 현황

I. 추진 배경

- 전세계적으로 특허를 개방하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
 - 테슬라(美), 도요타(日) 등은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자사의 신기술 특허를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 * (테슬라) 전기자동차 구동·동력전달 장치 특허 전체, (도요타) 수소자동차 특허 약 5,680건 등
 - 영국, 독일 등은 특허권자가 누구에게나 특허 실시를 허용할 경우 해당 특허의 특허료를 감면하는 제도(Licence of Right)*를 운영
 - * 영국이 1907년에 최초 도입하여 대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
- 국내 기업들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등에 특허 개방
 - 기업·출연(연) 등이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자발적으로 특허 개방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특허 개방 현황('15. 6월) >

▪ (LG) 특허 52,000여건 유·무상 개방, ▪ (삼성) 특허 38,000여건 유·무상 개방
▪ (현대자동차) 특허 1,400여건 무상 개방 ▪ (SK) 특허 600여건 유·무상 개방
 -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특허를 벤처·중소기업 등에 무상으로 개방하는 사례 등장
 - * (대우조선해양) LNG연료공급시스템 특허기술을 국내 기자재 업체에 무상 제공('15.2)

☞ **기업·출연(연) 등이 특허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된 특허*가 벤처·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개방특허 : 기업이나 출연(연) 등 특허권자가 벤처·중소기업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 개방(양도, 실시허락 등)을 선언한 특허

II. 현황 분석

◇ 기업·출연(연) 등 현장 의견을 수렴('15.4~6월)한 결과, 특허료 감면, 개방특허 이전·사업화 지원, 수요-공급 매칭 기반 구축이 시급

□ (특허료 감면) 특허 유지기간이 길수록 기업의 특허료 부담이 급증하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특허 무상 개방에 별도 지원이 없는 실정

○ 현행 특허료 감면제도*는 중소·중견기업 등 '경제적 약자'와 출연(연) 등 공공기관 위주로 초기 단계(6년차까지)에서만 지원

* (1~3년차) 30~70% 감면, (4~6년차) 30% 감면, (7년차~) 감면 없음 (<붙임 1> 참조)

□ (개방특허 이전·사업화) 기업·출연(연) 등이 개방한 특허를 벤처·중소기업에 이전·사업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 개방특허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특허기술 매칭 전문기관과의 협력·연계 체계 강화 필요

○ 벤처·중소기업 등이 이전받은 우수한 개방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시급

□ (개방특허 매칭 기반) 기업·출연(연) 등이 개방한 특허에 대해 통합 검색이 곤란하고, 특허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 기반 미흡

○ LG, 삼성, 출연(연) 등의 개방특허 정보가 각 기관별 웹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어, 특허기술 수요자가 통합 검색 등에 애로 호소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특허기술마당,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등

○ 특허 공급자는 인터넷을 통해 특허를 공개하고 있으나, 특허 수요 기업들은 경영전략상 해당 특허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경향

(참고) 해외 개방특허 활용 사례

< 핀란드 : Nokia-Technopolis Innovation Mill 프로젝트('09~) >

□ 개념 : 대기업의 미활용 아이디어/특허를 벤처·중소기업이 사업화

□ 주요 내용

- Nokia : 4,000개 이상의 미활용 아이디어 공개
- Technopolis : 아이디어 사전 검토, 선정, 및 계약 등 지원
- 테케스(Tekes)·지자체 : 아이디어가 매칭된 기업에 자금 지원

□ 성과

- '09~'13년 동안 창업기업에서 75개, 기존 기업에서 29개 등 총 104개의 프로젝트 추진, 65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Spinverse 등 다른 대기업으로 'Innovation Mill' 확산 중

< 일본 : 지식재산 비즈니스 매칭 지원사업('07~) >

□ 개념 : 대기업의 특허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 주요 내용

- 개방특허 수요-공급 매칭 지원을 위한 '개방특허DB', '지역별 지적재산권 교류회' 등 형식의 개방특허 매칭 네트워크 운영
- 대기업 개방특허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기술 과제 해결, 개방특허 사업화 공모전*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지원

* '개방특허'와 '해당 개방특허를 이용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패키지화하여 이전함으로써 '단순 하청 중소기업' 등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 도모

□ 성과

-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로 안정적 기업 운영·성장 지원
 - * 가와사키市는 '07~'13.11월까지 16개 개방특허 매칭 및 상품화 지원
- 후지쓰, 닛산자동차, 일본전기(NTT) 등 대기업 및 지자체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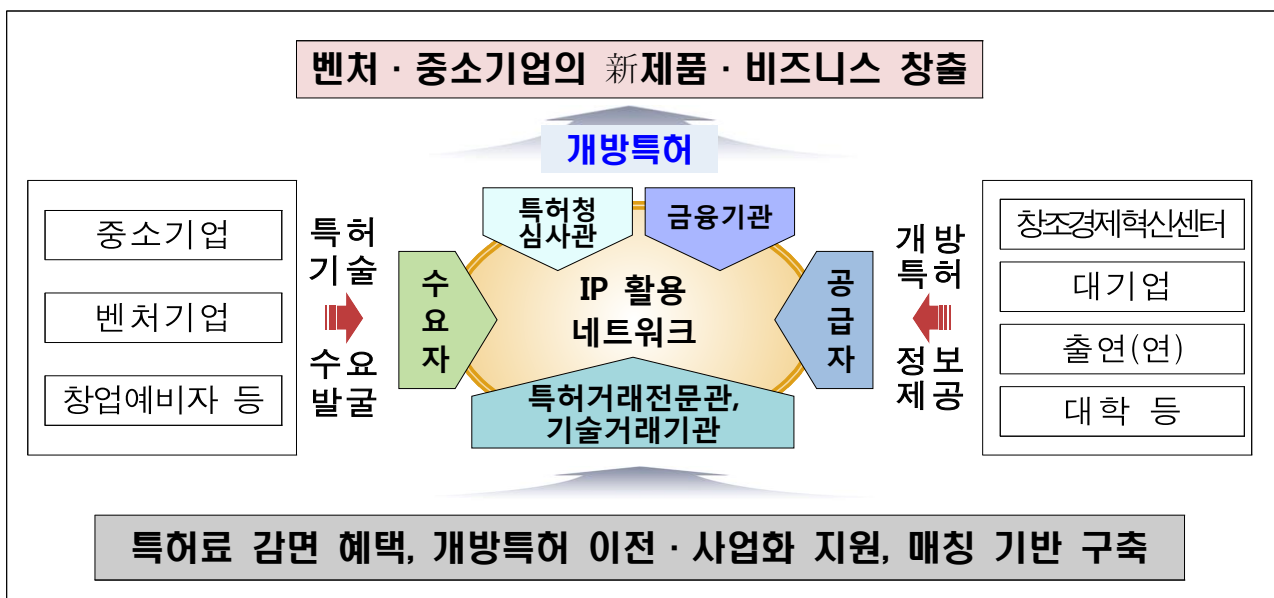
Ⅲ. 주요 추진과제

목 표

특허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

- ① 특허를 무상 개방할 경우 특허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
- ② 기업·출연(연) 개방특허의 벤처·중소기업 이전·사업화 지원
- ③ 특허기술 수요자-공급자 간 개방특허 매칭 기반 구축



1

특허 무상 개방에 대한 특허료 감면*

※ 특허청에 특허료 납부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IP 포인트' 형태로 제공

□ 개방특허의 무상 실시를 허락할 경우 특허료 지원

- 기업·출연(연) 등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를 개방하여 중소·중견 기업과 무상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계약 유지기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특허료 50% 감면 혜택 부여

* 전용실시와 통상실시에 모두 적용되며, 무상 통상실시계약인 경우에는 희망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실시 허용 필요

□ 개방특허를 무상 양도한 경우에도 인센티브 제공

- 기업·출연(연) 등이 개방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특허를 무상 양도한 기업·출연(연) 등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 1건당 30만원 상당의 'IP 포인트' 부여

< 특허료 감면 요건(안) >

구 분	무상 실시	무상 양도
지원	특허료 50% 상당 IP 포인트	1건당 30만원의 IP 포인트
공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창조경제혁신센터 웹사이트와 연계 추진]에 무상 개방(양도, 실시 등) 공시	
계약 기간	무상 통상/전용실시 계약이 1건 (계약기간 3년 이상) 이상 존재하고 계약기간 범위 이내	개방특허를 양도받은 중소기업 등이 1년차 이상의 특허료를 납부
권리관계	특허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권리 이전이 등록될 것	
계약자	무상 통상실시/전용실시/양도 계약 당사자가 법률상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무상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감면 세부절차는 <붙임 2> 참조

2

개방특허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특허거래전문관 연계를 통한 개방특허 이전 활성화

- (1단계) 주요 지역에 배치된 특허거래전문관*이 특허기술 수요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유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특허기술 수요 발굴, 공급 기술 매칭 등을 담당하는 특허기술 거래 전문가[(서울) 5명, (대전) 2명, (대구) 1명, (광주) 1명]

- (2단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발굴된 특허기술 수요기업에 대기업·출연(연) 등이 제공하는 개방특허를 매칭 지원
- (3단계) 개방특허, 계약당사자 등의 유형에 따라, 특허거래전문관과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개방특허 이전 협상·계약체결 지원

※ ‘특허거래전문관’을 9명('15)에서 17명('16)으로 확대하여 17개 시·도 전지역을 지원

□ 개방특허 이전 모델을 다양화하고 후속 사업화 지원 강화

- 지역의 벤처·중소기업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개방특허 사업화 공모전 등을 통한 개방특허 이전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

* 충북·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각 기업별로 배치한 개방특허 전담인력,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컨설턴트 등으로 ‘특허지원팀’ 구성·운영

- 개방특허를 도입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 특허-연구개발(IP-R&D) 전략 컨설팅, 이전기술개발사업 등을 연계 지원

* 중소기업 등이 특허를 기반으로 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 지식재산 금융 유형별 지원 세부내용 >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응 자	보증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IP담보대출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중소·중견기업	최대 10~20억원
투자 연계 특허기술 평가 지원		투자기관(또는 기업 공동)	투자 여부 판단에 활용

3

특허기술 수요-공급 매칭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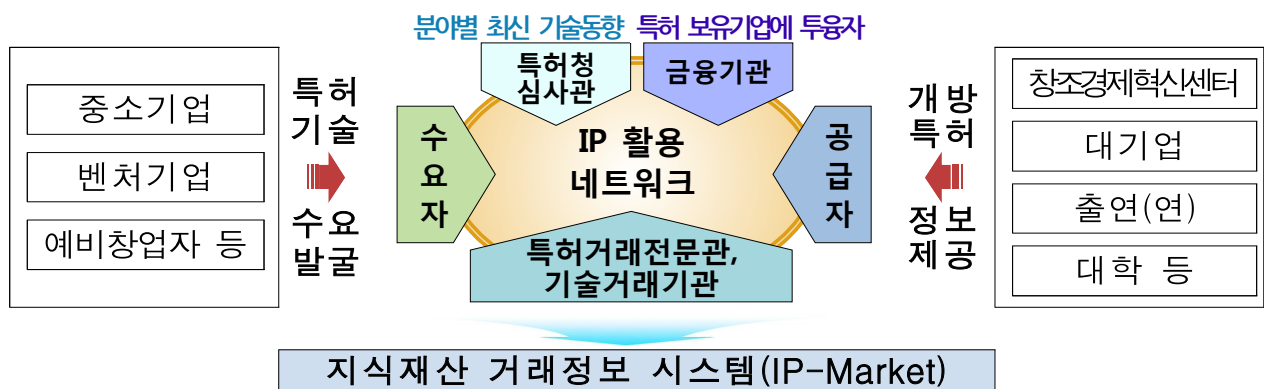
□ 특허기술 수요자,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IP 활용 네트워크' 구축

- 벤처·중소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출연(연), 기술거래기관* (총 86개),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자발적인 개방특허 매칭 환경 조성

* 국내 기술거래기관 현황 : <붙임 3> 참조

- 기술분야별 특허기술 세미나·포럼 등(기술분야별 월 1회 이상)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수요 기술 정보를 발굴하여 온·오프라인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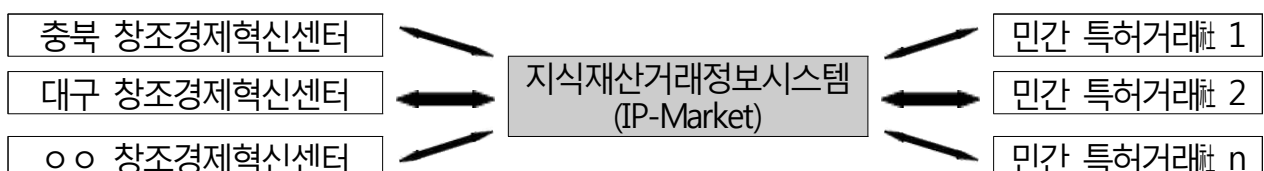
< 지식재산(IP) 활용 네트워크 >



□ 개방특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고도화

-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분산되어 있는 개방특허 정보를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개방특허 매칭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개방특허DB, 특허기술 수요 등을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공유

< 개방특허 및 특허기술 수요 정보 공유체계 >



IV. 기대 효과

- 벤처·중소기업이 대기업·출연(연) 등의 우수 개방특허를 이용하여 新제품·비즈니스 개발 활성화 → 창조경제 및 경제혁신에 기여
- 대기업은 특허 개방을 통한 비용 절감, 벤처·중소기업은 대기업 특허로 경쟁력 제고 →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에 기여

V. 향후 추진계획

☐ 조치 사항

- 대기업, 출연(연) 등 대상으로 유·무상 개방특허 확대

☐ 추진과제별 일정 및 관련부처

세부 추진과제	일정	관련부처	
		주관	협조
1. 특허 무상 개방에 대한 특허료 감면			
- 특허 무상 실시를 허락할 경우 특허료 지원	'15.11	특허청	기재부
- 특허를 무상 양도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15.11	특허청	기재부
2. 개방특허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특허거래전문관 연계 강화	'15.하~'16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 개방특허 이전모델 다양화 및 후속지원 강화	계속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3. 특허기술 수요-공급 매칭 기반 구축			
- IP 활용 네트워크 구축	'15.10	특허청	미래부, 산업부
-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고도화	'16	특허청	미래부, 산업부

붙임 1

현행 특허료 감면제도 개요

□ 특허권자는 특허의 '독점배타권'에 대한 대가로 특허료 납부

- 개인, 중소·중견기업 등 '경제적 약자'와 공공연구기관, 지자체, 기술이전전담조직 등 '공공 기관' 위주로 특허료 감면

<특허법>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생략)

②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특허권자 유형' 및 '특허 유지 연차'에 따라 특허료 차등 감면

< 특허권자별 특허료 감면율(■ 중소기업·개인, ■ 중견기업*, ■ 공공(연) 등, ■ 지자체) >

특허 유지 연차	1~3년				4~6년				7년 이상			
연차별 감면율	70%	30%	50%	50%	30%	30%	30%	30%				

*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1~3년차 특허료의 85~100% 감면

** 중소·중견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4~6년차 특허료를 50%까지 감면액 증액

□ 특허 유지 연차별 특허료 및 감면액

연차	매년 납부금액	특허료 (청구항 9개 기준)	중소·중견기업 특허료 감면액
1~3년	15,000원 + 청구항 수×13,000원	132,000원/년	(중소) 92,400원/년 (중견) 39,600원/년
4~6년	40,000원 + 청구항 수×22,000원	238,000원/년	(중소, 중견) 71,400원/년
7~9년	100,000원 + 청구항 수×38,000원	442,000원/년	-
10~12년	240,000원 + 청구항 수×55,000원	735,000원/년	-
13~25년	360,000원 + 청구항 수×55,000원	855,000원/년	-

□ 개요

- 기업·출연(연) 등이 벤처·중소기업과 무상 양도 또는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허료 감면 혜택* 제공

* 특허청에 특허료 납부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IP 포인트' 형태로 제공

□ 특허료 감면 프로세스

- ① 특허권자가 한국발명진흥회에 '유무상 개방특허 정보' 제출
-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유무상 개방특허 정보'를 '지식재산거래정보 시스템(IP-Market)'에 탑재하여, 일반 공중에 공시
- ③ 특허권자와 개방특허 수요기업 간에 양도/실시 계약 체결
 - ⇒ 무상 양도/실시 계약인 경우, 한국발명진흥회가 계약 지원
 - ⇒ 유상 양도/실시 계약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계약
- ④ 특허권자가 무상 양도/실시 계약서 등 특허료 감면 증빙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IP 포인트' 부여 신청
 - ⇒ 특허청은 신청 요건을 검토하여 관련 요건 충족 시, 신청자에게 특허료 감면 혜택(IP 포인트) 제공
- ⑤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할 때, 'IP 포인트'를 사용

□ 기술거래기관 지정 현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5. 4월말 기준)

구분	기술거래기관
공공기관 (10개)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은행,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산학),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테크노파크 (17개)	(재)경기테크노파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광주테크노파크,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전테크노파크, (재)부산테크노파크, (재)송도테크노파크,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 (재)충남테크노파크, (재)충북테크노파크, (재)포항테크노파크, 서울테크노파크(TP),
민간회사 (59개)	(주)기술과가치, (주)날리지웍스, (주)더비엔아이, (주)델타텍코리아, 도원닷컴(주), (주)라운과기술, (주)리온아이피엘, (주)마크프로, (주)비즈하스피탈, (주)아이피씨앤비, (주)아이피웨이, (주)엔에이엠아이엔씨, (주)원니스, (주)웰처기술, (주)원티스글로벌, (주)웍스, (주)유라스텍, (주)이엠오티, (주)이디리서치, (주)이지팩스, (주)지케이티엠, (주)지티티비,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주)테크란, (주)특허와사업, (주)피앤아이비, (주)피에스엠비,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다울, 특허법인 무한, 특허법인 세신, 특허법인 웰 엘엔케이, 유미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 특허법인 정안, 특허법인 태평양, (사)한국기업평가원, 세연특허법률사무소, (주)웰아이피에스, 특허법인세아, 기술과행복, 비전인사이드, 아이피온, 아이피텍코리아, 아침기술, 경영연구원, 알앤디경영, 전략연구소, 위노베이션, 이노코리아, 컨설팅그룹(주), (주)르호봇, (주)솔투로, (주)아이티엘, 케이엘피아이 컨설팅, 특허법인 남촌, 특허법인 이노, 특허법인 천지, 특허법인 프랜즈드림, 특허법인 플러스, 특허법인 화우
계	총 86개 기관

□ 연도별 기술거래기관 거래 실적

(단위: 건)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FG FO	공공기관	287	397	594	366	306	457	686	601
	테크노파크	172	156	269	370	401	498	449	458
	소 계	459	553	863	736	707	955	1135	1,059
민간기관		80	104	189	254	220	291	260	399
전체 합계		539	657	1,052	990	927	1,246	1,395	1,458